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3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유해조류 군집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들의 생활권 주변 등 장소에서 유해조류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의 명확성을 위해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등 세부적 규정을 추가 명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나. 조례 전반에서 “유해조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 다.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 라. 자구 수정 및 조문 제목 변경(안 제3조 ~ 제5조)
- 마.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 바.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 사. 상위법 인용 조항 추가(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3, 제73조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위임 사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먹이주기 금지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야생생물을 적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2) 조례 전반에서 “유해조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 3)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 안 제2조에서 “유해야생동물”을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으로, “먹이주기”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직접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으로 규정함
- 4) 자구 수정 및 조문 제목 변경(안 제3조 ~ 제5조)
- 5)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²⁾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함

6)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7) 상위법 인용 조항 추가(안 제10조)

다. 검토의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2022. 12. 13., 2024. 1. 23.>

1. ~ 9. (생략)

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부 칙 <법률 제20119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9.] [대통령령 제34509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3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환경부령 제1102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7. 2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2. 1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